

병원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의무직렬공무원(전임계약직공무원 포함)의 의료업무수당이 일률적으로 300,000원씩 인상됨에 따라 서울시학교보건원에 근무하는 서울시교육감 소속 지방의무직렬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하고,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근거를 신설하기 위한 것임.

- 지방의무직렬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직급별로 518,000원에서 710,000원까지 지급하였던 것을 일률적으로 300,000원씩 인상하여 818,000원에서 1,010,000원까지 지급하고,
- 현재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은 별도의 규정 없이 서울시 전임계약직공무원 의료업무수당에 준하여 지급하고 있어 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지급시기는 2004. 1. 1부터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함.

○ 현재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의무직렬공무원은 7명(3급 1명, 4급 4명, 5급 2명)이고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은 2명으로 동조례안 개정에 따른 수당인상으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3,900만원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별도의 추경 편성 없이 교육비특별회계 인건비에서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 일반직 및 계약직 의사 현황

계	의무직렬공무원			전임계약직공무원		
	소계	전문의	일반의	소계	가급	나급
9	7	6	1	2	1	1

- 동개정조례안의 타당성과 관련하여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은 국가직 공무원에 관한 규정으로 동 규정중 의료업무수당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을 따르고 있는 서울시교육감소속 지방의무직렬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조정을 위한 조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 국가의무직렬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개정으로, 서울시 소속 지방의무직렬공무원의 경우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개정(2003.9.25 서울특별시조례 제4133호)으로 2003.7.1부터 300,000원씩 인상되어 지급되고 있어,
 - 타 기관과의 형평을 맞추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일반직 및 계약직 의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의료업무수당 인상을 위한 동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한편, 교육감소속 지방의무직렬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서 정하게 되어 있는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별표9 제2호 규정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미 2004. 5. 24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의무직렬공무원의 수당 인상에 관한 승인을 받았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립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립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의2 제1호중 “지방이주”를 “거주지이전”으로 한다.

서울특별시립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립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를 “서울특별시립도서관및평생학습관사용료징수등에 관한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30조”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45조(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 준용)”로, “서울특별시립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립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으로, “각종 사용료”는 “각종 사용료 등”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사용료의 징수”를 “사용료 등의 징수”로, 동조제1항중 “자료복사료”를 “자료의 복사 및 출력료”로, 동조제3항중 “문화교실 참여에 대한 수수료”를 “강습·교육 참여에 대한 수강료”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평생학습관내에 설치된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를 준용하여 징수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사용료 및 수강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사용시간) 사용시간은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의 개관시간으로 하되 관장이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2 (사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부액을 반환할 수 있다.

1. 수강료를 납부한 후 해외 및 거주지이전, 사고,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할 수 없을 때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 및 수강이 불가능할 때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 또는 수강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 및 수강을 연장할 수 없을 때
4. 사용료 및 수강료를 과오납한 때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자료 복사 및 출력료

구 분	용지 규격 (단위:mm)	1매당 사용료 (단면)
일반 복사기	B4(364×257)	50원
	A4(210×297)	30원
일반 프린터	B4(364×257)	80원
	A4(210×297)	50원
컬러 프린터	B4(364×257)	1,000원
	A4(210×297)	700원
마이크로필름 판독기	B4(364×257)	60원
	A4(210×297)	